

인천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7958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세희, 공종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용

변론 종결 2021. 10. 27.

판결 선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설계 및 감리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건물의 설계(경관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시공도서 일체)에 관하여 계약금액 8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별도, 40,000,000원은 계약 시, 30,000,000원은 착공 시, 16,000,000원은 준공 시 지급)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건물의 착공 공사감리업무(상주감리, 토목감리, 기계감리, 전기감리), 시공감리, 준공 시까지의 감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 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00,000원은 착공 시, 40,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 시, 26,000,000원은 준공 시 지급)으로 정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설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5. 4. 2. 주식회사 D(이하 'D')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E는 원고에게 'D에 설계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후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운영비로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비 및 감리비(이하 통틀어 '설계비'라고만 한다) 중 일부를 E 또는 그 지인인 F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 합계 189,200,000원을 초과하여 D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463,2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37,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¹⁾, 나머지 137,0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는 설계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운영비로 지급해주면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지급받은 설계비 중 137,000,000원을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9, 13~17호증, 을 제1~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D에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 집행을 요청하였고,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9. 24.~2017. 6. 9. 합계 463,200,0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15. 9. 24.	46,000,000				
2016. 2. 25.	70,000,000	2016. 2. 26.	40,000,000	2016. 2. 26.	40,000,000
2016. 4. 28.	50,000,000	2016. 4. 28.	22,000,000	2016. 4. 29.	20,000,000
2016. 7. 4.	70,000,000	2016. 7. 4.	60,000,000	2016. 7. 4.	35,900,000
2016. 8. 30.	30,000,000				
2016. 12. 7.	30,000,000	2016. 12. 6.	58,000,000 ²⁾ E는 그중 28,000,000원을 2016. 12. 7.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2016. 12. 7.	23,500,000
2017. 2. 10.	50,000,000	2017. 2. 12.	10,000,000		
2017. 2. 27.	115,000,000	2017. 2. 27.	61,000,000 ³⁾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7. 2. 27.	50,000,000
2017. 6. 9.	2,200,000				
합계	463,200,000		251,000,000		169,400,000

2)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D이 지급한 돈 중 합계 251,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E는 그중 적어도 169,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의 법무비용으로 지출하였다.

3) 원고는 신탁자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2016. 2. 17. 30,000,000원, 2016. 11. 25.

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1. 25. 지급받은 30,000,000원을 다시 E 등에게 돌려주었다.

4) 원고는 'E와 F이 원고에게 운영비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E는 45,500,000원⁴⁾, F은 4,000,000원⁵⁾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설령 그들이 피고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6319, 이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2. 19. '원고가 이미 E와 F 사이의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나64368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피고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할 운영지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종전 소송에서의 판단을 반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탁사에서 받은 돈과 피고가 받아야 될 설계비의 차액은 전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비와 이 사건 계약대금의 차액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를 과다 계상하여 D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피고는 D이 지급한 돈 중 일부를 E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비와 이 사건 계약대금의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8층을 원가에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대금을 최소한으로 정하였다.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는 이 사건 계약대금을 초과한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가 2016. 11. 25.경 작성하여 E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메모에도 총 설계비가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위 메모를 교부받은 후 설계비 산정 등에 관하여 지적하거나 항의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6. 4.경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실제로는 2017. 1.경 준공되었다.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8개월 넘게 연장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와 감리비가 증액되었다(원고와 피고가 변경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③ 위 메모에는 2016. 11. 25. 기준으로 "지급금 326,000,000원, 뺀머니 150,000,000원, 실입금 176,000,000원, 총 설계비 250,000,000원, 잔액 7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6. 1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로 합계 197,200,000원⁶⁾을 지급받고, E 등에게 101,000,000원⁷⁾을 지급하여, 결국 96,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종전에 계산된 잔액과 실제 지급된 잔액의 차액을 증액된 설계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D에서 지급받은 돈과 피고가 받아야 될 설계비의 차액은 전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운영비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신탁계좌에서 지급받은 463,200,000원 전액을 다 피고가 받아야 될 돈이 맞다"라고도 증언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받아야 될 설계비"가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를 청구하고 E를 통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실제 설계비와 원고가 지급받을 운영비를 얼마로 정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E가 원고에게 수시로 자금 청구를 하라고 한 후 얼마의 돈을 주면 원고가 이를 운영비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D에 설계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설계비를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그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영비를 미지급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약 4년 동안 피고에게 운영비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다.

더욱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과다 계상된 설계비 중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운영비 액수를 E가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알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받은 설계비 중 E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그의 요청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설령 피고가 과다 계상된 설계비 중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3~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위해 그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단독으로 개설하여 그 입출금을 배타적으로 관리한 점, D의 자금집행 권한과 절차8)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D에 설계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D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보호가 미흡해지거나 자금집행에 대한 위험을 후순위로 이전 또는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과다계상하여 받은 설계비는 편취된 장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보관자인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는 설계비를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의 방식이나 분배 비율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급받은 설계비 중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실제 설계비와 원고가 지급받을 운영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금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봉지수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한 금원은

169,400,000원이나, 계산상 착오로 13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E는 그중 28,000,000원을 2016. 12. 7.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3)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2016. 4. 28.자 22,000,000원 중 2,000,000원, 2016. 7. 4.자 60,000,000원 중 20,000,000원, 2016. 12. 6.자 58,000,000원 중 6,500,000원, 2017. 2. 12.자 10,000,000원, 2017. 2. 27.자 61,000,000원 중 7,000,000원, 합계 45,500,000원

5) 2017. 2. 27.자 61,000,000원 중 4,000,000원

6) 30,000,000원 + 50,000,000원 + 115,000,000원 + 2,200,000원

7) 58,000,000원 ~ 28,000,000원 + 10,000,000원 + 61,000,000원

8) D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반환채권은 D에 귀속되고, 원고도 일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D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